

3. 土地超過利得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 公告 第1997-12號 1997. 2. 14

주요 골자

가.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에 소재한 공장의 공장증설여유면적이 기준면적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되도록 함.

나. 임야의 개간에 의해 조성한 농지 또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준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재촌자경과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토지의 수용·해외이주·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촌자경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판정의 예외를 인정함.

다. 체육시설업용 토지중 정구장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등에 대한 수입금액적용비율과 광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유휴토지판정에 대한 법간 형평을 도모함.

개정 취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5,194호, 1996. 12. 31)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